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물 발견 신고 시 보고제도 도입〉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2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이물 발견 신고 시 보고제도 도입	2
2.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미보고자에게 벌칙 부과	7
※ 참고자료	10
1. 먹는샘물 품질관리 주요 절차	10
2. 「식품위생법」상 식품 이물관리 주요 절차	11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3일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물 발견 신고 시 보고제도 도입

개정안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신고받은 즉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원인 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2(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먹는샘

현행	개정안
	<u>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2023년 기준 국내 생수시장 규모가 연간 2조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연간 56억 개의 페트병(2020년 기준)이 입수되어 생산 및 시판 중인 가운데, 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물질 발견 신고 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¹⁾에 따라 관할 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식약처는

1)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식품과 달리 이물질이 발견되는 신고를 받더라도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현행법상 먹는샘물의 위생관리 관련 보고제도가 부실하여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²⁾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식품과 동일하게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먹는샘물의 부실한 위생관리 관련 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샘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은 이물 발견 신고 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범위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안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 제조업체와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를 중복하여 받게 된다는 점, 시·군·구에는 먹는샘물 관련 업무부서가 없어 이를 포함 시 업무가 가중되고 제조업체에도 혼란을 일으킬 우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먹는샘물 관할 기관에 속하지 않는 시·군·구청장은 제외하고, 제2항에서 먹는샘물 관할 기관이 속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먹는샘물 관련 이물 문제는 먹는샘물 개봉 이후 오인에 기인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보고 의무 대상을 “개봉하기 전” “제품 내”의 이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도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및 먹는샘물협회의 의견임.

다만,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식약처고시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먹는샘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 및 보고 의무 대상 이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추후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식품위생법」은 제46조제2항⁴⁾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미보고자에게 벌칙 부과

개정안은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한 자는 형사처벌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 -----.
1. ~ 16의2. (생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의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u>
<u><신설></u>	<u>16의4. 제44조의2제2항의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u>
17. ~ 19. (생략)	17. ~ 19.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60조의2(과태료)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현행	개정안
	<u>부과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처벌 수준을 보면,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시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시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⁵⁾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⁶⁾의 경우에도 거짓 보고 및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처벌 수

5) 「식품위생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물질의 범위 선정, 신고 및 보고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⁷⁾가 있을 것을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

7) 환경부 의견임.

[참고자료 1] 먹는샘물 품질관리 주요 절차

< 현행법상 먹는샘물 품질관리 주요 절차 >

절 차	주 요 내 용	주 체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법 제21조)	- 시설명세서(제조시설, 취수정 설비, 오염방지사설 등), 취수예정량 등 구비요건 확인	시·도 → 업체
○ 먹는샘물 제조 및 유통	- 수질기준, 용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등 준수	업체
↓		
○ 소비자 민원 제기	-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을 유선 또는 민원서식 등으로 제기 * 시도에서 민원규정에 따라 조치(접수, 조사, 결과통보)	소비자 → 시·도, 환경부
↓		
○ 지도점검(법 제42조)	- 제조업체 방문하여 원수제품수에 대한 시료 채취 - 수질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시·도 → 업체
○ 유통제품 수거검사 (법 제42조)	-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 - 수질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시·도
↓		
○ 위반여부 검사	- 수질기준, 용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 수질검사 실시(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
↓		
○ 회수·폐기 명령 사유 발생	- 수질기준 위반, 용기 유해물질 검출 등 ※ 수시·정기 점검, 수거검사 등	시·도
○ 위해상품 정보 통보 (지도·점검규정* 제8조의2)	- 제품명, 제조일자, 부적합내역 등 차단에 필요한 제품정보 통보	시·도 → 환경부
↓		
○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지도·점검규정 제8조의2)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상공회의소)에 해당 제품 정보를 등록하면 유통매점에서 판매 차단	환경부
↓		
○ 회수·폐기 명령 (법 제47조)	- 회수·폐기 대상 제품, 회수·폐기량, 이행 기간 등	시·도 → 업체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48조)	- 수질기준, 용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위반 등	시·도 → 업체
↓		
○ 회수·폐기 이행계획서 제출 (법 제47조)	- 회수 및 폐기 등 처리방법 - 그 밖에 명령 이행에 필요한 사항	업체 → 시·도
↓		
○ 회수·폐기 이행 완료보고서 제출	- 회수·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포함	업체 → 시·도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참고자료 2] 「식품위생법」 상 식품 이물관리 주요 절차

< 「식품위생법」 상 식품 이물관리 주요 절차 >

절 차	주 요 내 용	주 체
○ 식품 제조업 허가 (법 제37조)	- 식품 제조, 소분, 유통 등 관련 영업자	식약처, 시·도, 시·군·구 → 업체
○ 식품 제조 및 유통	- 수질기준, 용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등 준수	업체
↓		
○ 식품 이물보고 (법 제46조)	- (대상) 3mm 이상 유리·플라스틱·금속류, 혐오감물질(동물사체, 곤충, 기생충, 알) 등 - 소비자 → 영업자 → 지자체 → 식약처	지자체 → 식약처
↓		
○ 식품 이물원인조사 및 결과통보 (법 제46조)	- 조사단 ○ (식약처, 지방식약청) 3mm이상 유리·플라스틱· 금속류, 동물사체 ○ (시·도, 지자체) 곤충, 기생충 및 알, 고무, 나무류 등 - 제조·유통·소비 등 단계별 조사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조사단 → 영업자, 소비자
○ 식품 이물조사평가 (법 제46조)	- 이물전문자문단 구성운영(15명 이내) - 원인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요청 시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식약처 → 영업자, 소비자
↓		
○ 위해식품 회수·폐기 (법 제72조)	- 위해식품 또는 용기 등	식약처 → 영업자
↓		
○ 행정처분 (법 제72조 등)	- 품목제조정지(7일~2개월) 및 폐기	식약처 → 영업자